

IV. 학생 장학금 지원, 지원 제한, 반환 및 환수

1. 장학생서약서는 무엇인가요?

답 변

- ▶ 장학생서약서는 장학생 본인 스스로가 주거안정장학금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주거안정장학금 관련 부정청구 등(허위 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을 하지 않도록 공공재정환수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로서 장학생 선발 이후 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한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2. 장학생서약서는 어디에서 제출하나요?

답 변

- ▶ 장학생서약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 장학생 서약서 제출 메뉴를 통해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장학생서약서 제출기한이 있나요?

답 변

- ▶ 해당 학기 선발된 날부터 학기 말일까지(1학기: 8.31. 2학기: 2.28.)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위한 서약서 제출기한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니, 소속 대학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는 무엇인가요?

답 변

- ▶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는 선발된 장학생이 해당 학기 첫 번째 월(1학기: 3월, 2학기: 9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월(1학기: 4~8월, 2학기: 10~2월, 계절학기 포함 시)에 대한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해당 월에 발생한 주거 관련 비용지출을 보고하고, 해당 월 지출금액의 최대 20만 원까지 실비로 주거안정 장학금 지급을 대학에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 3월 및 9월은 지급요청서 작성 없이 장학생 서약서만 제출하면 20만 원 지급

5. 장학생 서약서 및 지급요청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답 변

- ▶ 장학생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 학기 첫 번째 월(1학기: 3월, 2학기: 9월)에 지급하는 20만 원의 정액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서약서 미제출 시 주거안정 장학금 지급요청서 작성이 불가하므로 서약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 ▶ 또한, 첫 번째 월에 지원하는 정액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월(1학기: 4~8월, 2학기: 10~2월, 계절학기 포함 시)에 대한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월의 지급요청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6.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는 어디에서 작성·제출하나요?

답 변

- ▶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 지급요청서 작성 메뉴를 통해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지급요청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성할 수 있나요?

답 변

- ▶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주거 관련 지출 발생일이 속한 월의 익월부터 해당 월에 대한 지급요청서를 작성(예: 4월 지출분은 5월부터, 5월 지출분은 6월부터)할 수 있으며, 학기별 사업종료일(1학기: 8월말, 2학기: 2월말)이 지난 후에는 작성이 불가하므로 기한 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 대학의 지급요청서 검토 및 장학금 지급은 대학별 일정에 따름)
- ▶ 예외적으로, 매 학기 마지막 월(1학기: 8월, 2학기: 2월)은 해당 월부터 지급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작성일 기준 직전일의 지출까지 작성 가능하므로, 8월은 8월 2일부터, 2월은 2월 2일부터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 8월 5일에 지급요청서 작성 시, 8월 1일부터 4일 지출분까지 작성 가능
- ▶ 시스템상으로 8월에 4, 5, 6, 7, 8월분의 지급요청서 작성이 가능하지만, 대학별 자체 운영 일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하므로 소속 대학의 별도 제출기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요청서 제출이 안 된 경우 지급 제외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계절학기(1학기: 7~8월, 2학기: 1~2월)는 계절학기 수강자로 등록된 학생들만 지급요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계절학기 등록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요청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소속 대학에 본인의 계절학기 수강자 등록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에서 장학생의 계절학기 수강 여부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계절학기 지급요청서 작성 가능

8. 주거안정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제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변

- ▶ 중복 수혜가 제한되는 대상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현금성 지원금 일체입니다. **중복 여부는 주거안정장학금과 중복 제한 대상 사업 지원금의 지급일(실제 지급된 날짜 기준)이 같은 연도 및 월(월 기준)에 속하는 경우 중복 수혜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안정장학금을 2025년 3월 5일, 4월 10일 수령하고, 타 주거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2025년 4월 18일 수령한 경우, 2025년 3월은 중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거안정장학금은 반환 의무가 없고, 4월만 중복에 해당하여 주거안정장학금 또는 타 주거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전액(중복 해당월분의 전액) 반납하여 중복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4월 18일 수령한 타 주거지원금이 지난 3월분도 포함된 3~4월분 합산지원금인 경우라도, 중복 여부는 지급일(지급원인일 아님)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3월은 중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중복 수혜가 제한되는 대상은 정부(공공기관 포함)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거 지원 사업의 주거 관련 현금성 지원이며, **아래의 경우는 중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거급여 (정부 주거지원 사업이지만 가구단위 지원인 점 고려하여 제한 대상 제외)
 - 민간 주거지원 사업의 지원금 수혜 (민간 장학재단, 민간 복지재단의 지원 등)
 - 지자체 전입축하금, 전입지원금 등 신규 주민 유치와 지역 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목적 사업(사업 핵심 목적이 주거지원이 아닌 사업)으로서, 지원금의 사용처가 주거비에 한정되지 않는 지원금 수혜
(단, 월세, 기숙사비 등 사용처가 주거비로 한정되는 경우 중복에 해당)
 - LH임대주택 등 현금성 지원이 아닌 주거지원 (주거 생필품 등 현물지원 포함)
 -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 지원(바우처 등)은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상 동일 항목(수도광열비, 공동주택관리비)에 한하여 중복에 해당하며, 그 외 항목(임차비용, 이자비용, 수선유지비)과는 중복에 해당하지 않음

9. 지급요청서 작성 시 지출 증빙자료를 업로드하게 되어 있나요?

답 변

- ▶ 장학생의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 작성 시 증빙자료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요청서에 작성된 주거 관련 비용에 대하여 대학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장학생은 대학에 소명하여야 하며 불이행 또는 적절한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출분에 대하여 대학으로부터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또한, 증빙이 가능한 지출을 사실대로 작성하고 해당 증빙자료를 장학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허위 또는 과다 청구 등 부정청구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른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조치 될 수 있으므로 허위 작성을 엄격히 금지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10. 지출 증빙은 없는데 지급요청서에 작성 가능한가요?

답 변

- ▶ 지급요청서는 실제로 지출하고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작성하여야 합니다.

11. 장학생 본인 명의의 지출 또는 본인 명의의 계약만 인정되나요?

답 변

- ▶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지출 및 계약만 인정되나, 예외적으로 임차비용(보증금, 월세, 기숙사비 등)에 한하여 부모님 명의의 지출 및 계약(임대차계약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부모님 명의의 이자비용 등 임차비용 외 지출은 불가)

12. 주거 관련 비용의 지출일자별 지급요청서 작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변

- ▶ 주거안정장학금은 선발된 해당 학기 동안 장학생이 주거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을 월별로 구분하여 최대 2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장학생은 실제 지출한 일자가 속한 월을 기준으로** 주거 관련 지출을 재단 홈페이지에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에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 작성 시 **지출일자별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정 기간) **지출일이 속한 월 기준 산정**(지출 원인 발생 월(예: n월분 월세)과 무관*)
 - * 예) 4월분 월세를 5월에 지출하였다면 5월 지급요청서에 작성(4월 작성 불가)
 - (기간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사후 지출의 해당월분(지출원인월) 지출 인정**
 - (사전 지출) 임차보증금, 임차료 선급금*, 관리비 선급금*
 - * 선급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비용을 일괄하여 사전 납부하는 경우
 - (사후 지출) 매월 말일 자동이체 설정한 임차료(월세), 관리비의 지연 이체*
 - * 지연 이체: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은행 사정으로 다음 영업일(익월) 이체된 경우

[산정 기간 예외 예시]

- ▶ '25. 2월초에 1년간 거주하기로 계약한 하숙집의 임차료 1년간 비용을 전액 일시 납부함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비용을 일괄 사전 납부하였으므로, 해당 비용을 12개월로 나누어 '25년 2월부터 '26년 1월까지 월별 지출 인정 가능(임차비용-임차료 선급금 선택-개월수 입력)
- ▶ 임차하여 거주 중인 원룸의 월세를 매월 말일 임대인에게 자동이체하고 있는데, '25년 5월분 월세가 5. 31.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영업일인 6. 2.(월)에 이체됨 (6월분은 6. 30. 정상 이체됨)
 - 원칙적으로 5월분 월세가 6. 2. 지출되어, 6월 지급요청서에 해당 지출 비용을 작성하여야 하나, 자동이체 설정한 말일이 공휴일로서 다음 영업일(익월) 이체된 경우에는 해당월분(5월) 지출로 인정 가능

13. 지급요청서에 기숙사비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답 변

- ▶ 기숙사비는 일반적으로 1개 학기분 또는 연간 거주분 전액을 일시금으로 선납하므로, 지급요청서 작성 시 **대분류: 임차비용**, **상세분류: 임차료 선급금**, **개월: 4**(예: 거주기간이 3~6월인 경우)을 입력하시면 지출금액 1개월분이 자동 계산됩니다. 납부한 거주기간에 속하는 다른 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동일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 ▶ 실제 거주일 수와 상관없이 납부 대상 학기 거주기간의 개월 수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예: 납부 대상 학기 기숙사 거주기간이 3~6월인 경우 4개월, 3~8월인 경우 6개월)
- ▶ 기숙사 입주 조건에 식사가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의무식)에는 **납부 총금액을 기숙사비로 작성합니다.** (단, 잔여 식권을 사후 환불해 주는 경우 의무식으로 볼 수 없음)
- ▶ 기숙사 보증금은 경우 **임차비용 > 임차보증금** 항목으로 작성합니다.
- ▶ **3월, 9월분으로 정액 지급되는 20만 원은 기숙사비 산정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 1학기(3~6월 거주) 기숙사비 60만 원일 경우, 3월 지급된 20만 원이 기숙사비 60만 원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3월: 20만 원 정액 지급, 4월 15만 원, 5월 15만 원, 6월 15만 원 인정 가능 (60만 원 ÷ 4개월 = 월 15만 원)
- ▶ 계절학기 등록한 학생이 7~8월분 기숙사비를 6월에 지출한 경우, 7월 및 8월 지급요청서에 '임차료 선급금' 선택, 개월 수 '2'를 넣어 작성하면 됩니다.

14. 기숙사비 5, 6, 7월분 105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7월분도 받을 수 있나요?

답 변

- ▶ 기숙사비 5, 6, 7월분으로 105만 원을 납부했다면, 지급요청서에 임차비용 - 임차료 선급금, 개월 3을 입력하시면, 5, 6, 7월에 각 35만 원씩 임차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7월분은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만 지급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계절학기 미수강 시 7월분은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5. 1학기 기숙사비 비용을 이미 냈고, 계절학기 등록으로 7월 기숙사비를 6월에 지출해야 합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답 변

- ▶ 지급요청서는 지출일 기준 작성이 원칙이므로, 지출일이 속한 월의 지급요청서에 해당 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 지급요청서에는 ① 임차비용-임차료 선급금(6월분)과 ② 임차비용-임차료(7월분)을 각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선급한 6월분이 20만 원에 상당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7월분 청구의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7월분을 7월로 납부 기간 연장하여 지출하시기를 권장합니다.

16. 계절학기 등록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 변

▶ 계절 학기 여부는 대학의 학사정보에 따라 결정되며, 등록금 발생 여부, 학점 발생 여부는 무관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만 수강하는 경우 또는 소속 대학의 자체 기준으로 방학 중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17. 계절학기 수강 기간은 7월까지인데, 8월도 장학금 지원되나요?

답 변

▶ 장학생 본인의 실제 계절학기 수강 기간과 관계없이 계절학기에 등록하는 경우 방학 기간 2개월(하계: 7~8월, 동계: 1~2월) 모두 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18. 대학 근처가 아닌 본가 근처 대학교에서 계절학기 수업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장학금 지원이 되나요?

답 변

▶ 지출 인정기준은 정규학기, 계절학기 구분 없이 동일 적용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원거리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동일 광역교통권·인접 시·동일 군)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지출만 인정하므로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수강과목이 전부 온라인 수업인 경우에도 지원 불가)
* 단, 인정 지역을 벗어난 장소에서 대부분의 학업이 발생한다고 대학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대학소재지가 시·군지역으로 인접 시 또는 동일 군이 아닌 지역에 거주 필요성을 대학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19.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납부한 이자비용과 기숙사비를 동시에 청구 가능한가요?

답 변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납부한 이자 비용과 임차료 선급금은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디딤돌 대출이 장학생 본인 명의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본인 이외에 부모님 등 타인 명의 대출 이자 지원 불가).

20. 전입신고가 꼭 필요한가요?

답 변

▶ 전입신고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수도광열비, 공동주택관리비가 장학생의 명의로 청구되지 않은 경우, 장학생의 청구지 거주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또한, 타인 명의 계약의 임차지에 장학생이 공동 거주하는 경우, 해당 임차지에 장학생의 거주 확인을 위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1. 취업계(조기 취업한 학생에게 출석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제출한 경우에도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 변

▶ 대학에서 장학생 학적을 '재학'으로 인정한다면 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22. 지급요청서에 정확한 시간을 꼭 입력해야 하나요?

답 변

▶ 지급요청서에 작성하는 지출 시간은 정확한 시간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에 명시된 해당 시간을 작성 바랍니다. 단, 시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실제 지출한 시간과 가까운 시간으로 근사값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3. 보증금 4,500만 원으로 2년 전세 계약인데 24개월 입력이 안 됩니다.

답 변

▶ 임차보증금의 임차비용 환산 계산식은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에 시스템상 탑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연수 또는 개월 수에 관계없이 보증금은 보증금 환산율(연 4%)을 곱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환산차임이 산정됩니다.

* 예) 보증금 4,500만 원 × 4% ÷ 12개월 = 월 15만 원

24.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보증금 대출을 통해 마련한 경우 지급요청서에 보증금과 보증금 대출이자를 어떻게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나요?

답 변

▶ 전세보증금에 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이 섞여 있는 경우, ① 보증금 전액 입력(단, 보증금대출 이자비용 청구불가) 또는 ② 보증금 본인부담금 입력 + 대출 이자비용 청구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예시> 보증금: 5천만 원, 대출: 3,500만 원(이자 연 4.5%), 자부담 1,500만 원 >

구분	임차비용 > 임차보증금	이자비용 > 전월세보증금대출	인정금액 합계
1) 보증금 전액 입력	5,000만 원 입력 → 월 166,666원 인정 가능 (5천만 원×4%÷12개월)	-	166,666원
2) 보증금 + 이자비용 입력	1,500만 원 입력 → 월 50,000원 인정 가능 (1,500만 원×4%÷12개월)	131,250원 입력 (3,500만 원×4.5%÷12개월)	181,250원

25. 에어컨 청소비용, 와이파이 설치비용도 수선유지비로 지급요청 가능한가요?

답 변

▶ 제품 구입비가 아니라면 주거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설치·수리·청소 등 서비스 비용은 인정 가능하므로 에어컨 청소비와 와이파이 설치비도 지원 가능합니다.

26. 음악연습실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장학금 지원이 되나요?

답 변

- ▶ 하루의 일정 시간만 머무는 등의 경우 거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이 불가하지만, 일정 기간 실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27. 지급요청서의 인정금액 합계가 20만 원이 초과하게 보입니다.

답 변

- ▶ 지급요청서상 작성한 각 지출 비용 항목들의 지출금액에 대한 인정금액 합계는 20만 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승인금액은 2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28. 대학은 전라도 군산에 있고, 저는 경기도에서 실습 중입니다. 경기도에서 임차료가 발생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 변

- ▶ 대학소재지를 기준으로 동일 광역교통권·인접 시·동일 군에 속한 주거지에서 발생한 주거 관련 비용의 지출만 인정 가능하므로, 해당 임차료(관리비 등 모든 비용)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 다만, 인정 지역을 벗어난 장소에서 대부분의 학업이 발생한다고 대학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므로, 실습 중인 경기도에서 해당 학생의 학업이 대부분 발생한다고 대학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29. 대학은 전북이고, 저는 서울에 있는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입주 시 보증금의 일부를 LH에서 부담하였고, LH에서 부담한 보증금 금액의 1.5%(10만원 가량)를 매월 임차료의 형식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급요청서에 해당 내용을 작성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상 'LH에서 지원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임대료로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답 변

- ▶ LH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임차료 형식으로 납부하는 보증금액의 1.5% 상당 금액은 임차비용(임차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안정장학금은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동일한 광역교통권, 인접 시, 동일 군에 속한 주거지에서 발생한 지출만 인정 가능하므로, 대학소재지인 전북과 임대주택 소재지인 서울은 서로 다른 광역교통권에 해당하여 임차료 지출 인정이 불가합니다.
- ▶ 다만, 인정 지역을 벗어난 장소에서 대부분의 학업이 발생한다고 대학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 시행계획 9p에서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은 무슨 뜻인가요?

답 변

- ▶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임차보증금의 4%를 월 환산한(보증금*0.04/12) 월 차임을 뜻하며, 주택임차차입금 이자는 전월세보증금대출 이자비용을 뜻합니다. 즉, 임차보증금을 주거비용으로 지급요청서에 작성했다면, 해당 보증금 마련을 위해 발생하는 전월세보증금대출 이자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대출 5천만 원을 받아 전세 거주 중인 경우, 지급요청서에 작성할 수 있는 비용은 [임차비용>임차보증금] 또는 [이자비용>전월세보증금대출]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과 전월세보증금대출 이자비용을 모두 청구하면 동일한 주거비용에 대하여 이중 청구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 전세보증금에 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이 섞여 있는 경우, ① 보증금 전액 입력(단, 보증금대출 이자비용 청구불가) 또는 ② 보증금 본인부담금 입력 + 대출 이자비용 청구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예시> 보증금: 5천만 원, 대출: 3,500만 원(이자 연 4.5%), 자부담 1,500만 원 >

구분	임차비용 > 임차보증금	이자비용 > 전월세보증금대출	인정금액 합계
1) 보증금 전액 입력	5,000만 원 입력 → 월 166,666원 인정 가능 (5천만 원×4%÷12개월)	-	166,666원
2) 보증금 + 이자비용 입력	1,500만 원 입력 → 월 50,000원 인정 가능 (1,500만 원×4%÷12개월)	131,250원 입력 (3,500만 원×4.5%÷12개월)	181,250원

31. 장학생 선발 후 부모님집에 계속 거주 예정입니다. 지급요청서에 작성할 것이 없는데, 3월분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반환해야 하나요?

답 변

- ▶ 3월, 9월에 지급하는 주거안정장학금은 정액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이므로 장학생 자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32. 부모님집에서 통학하는 경우에도 장학금 지원되나요?

답 변

- ▶ 주거안정장학금은 대학소재지를 기준으로 동일한 광역교통권, 인접 시 또는 동일 군에 속한 주거지에서 발생한 주거 관련 지출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선발 기준상 장학생 부모님 주소지는 일반적으로 대학소재지 기준 원거리 지역이므로, 부모님집에서 통학하는 경우는 지출 인정이 가능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장학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33. 방을 늦게 구해서 1년에 조금 모자란 기간(25. 3. 31. ~ 26. 2. 1.)으로 계약하고 총거주비용을 한 번에 일괄 납부(선납)했는데, 선급금 개월 수 입력 시, 일수로 계산하면 11개월, 월 수로 계산하면 12개월인데, 지급요청서 작성 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답 변

▶ 지급요청서는 월 환산 산정(월할계산)이 원칙이므로, 12개월로 작성하면 됩니다.

34. 3월 월세를 2월 중순, 4월 월세를 2월 말, 5월 월세를 4월에 납부한 경우, 지급요청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답 변

▶ 월세를 1회에 1개월분을 지출하는 경우는 임차료 선급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몇월분 월세인지 관계없이 실제 지출이 발생한 월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주거 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월 지급요청서에는 4월에 실제로 지출이 발생한 5월분 월세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선급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비용을 일괄하여 사전 납부하는 것

35. 임차비용, 이자비용을 부모님이나 지인이 납부한 경우 장학금 지원되나요?

답 변

▶ 원칙적으로 학생 본인 명의의 지출에 한하여만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비용(보증금, 임차료(선급금 포함))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모님의 비용 납부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자비용은 인정 불가합니다.

- 임차비용: 부모님에 한하여 타인 납부 인정 가능 (보증금, 임차료(선급금 포함))
- 이자비용: 타인 납부 인정 불가 (이자비용은 학생 본인이 채무자로서 본인 명의의 이자비용 지출에 한하여 인정 가능)

36. 타인과 공동 거주 중인 경우(친구, 형제자매 등) 장학금 지원되나요?

답 변

▶ 기본 소명 서류에 더하여, 공동 거주 중인 타인(지인 또는 형제자매 등)과 장학생 간 월세 및 생활비 부담 관련 **계약서**와 해당 계약 내용에 따른 **지출(이체)내역**, 해당 기간에 거주 증명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등이 추가로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 소명 서류: ① 임대차(매매)계약서, ② 동거인과의 장학생 간 금전 부담 관련 계약서, ③ 임대인에게 지급한 지출(이체)내역, ④ 장학생과 동거인 간 지출(이체)내역, ⑤ 해당 임차지 거주 사실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 등

37.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장학생은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 변

- ▶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주거급여법」 제7조의2에 따라 장학생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추가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 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는 경우, 주거안정장학금 선발심사에서 수혜가 확인되면 심사 탈락하며, 장학금 선발 이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한 연월 기준 주거안정장학금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38. 중복 수혜에 해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 ▶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은 연도의 해당 월에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현금성 지원을 받으면 중복 수혜에 해당합니다. 실제 지급된 날이 속한 월에 대하여 중복이 제한되며,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복되는 사업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중복 수혜에 해당하는 월의 지원금을 전액 반납하고 수혜를 포기하여야 합니다.
- ▶ 주거안정장학금 포기를 희망하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장학금 포기(반환) 서약서를 제출하고, 중복에 해당하는 월의 장학금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39. 장학금을 포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 변

- ▶ 주거안정장학금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타 주거지원 사업에 선발되어 주거안정 장학금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포기(반환) 서약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장학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단,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을 잃게 되므로 신중히 선택 바랍니다.
- ▶ 이미 지원받은 장학금 중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하는 장학금이 있는 경우 해당 학기 받은 장학금을 전액 반환(수혜횟수 미차감)할지, 필수적으로 반환해야 할 장학금만 반환(수혜횟수 차감)할지를 선택하신 후 전자서명을 하면 최종 제출됩니다. 제출 후 해당 사실을 대학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다만, 포기 사유 없이 장학생 임의로 수혜횟수 관리를 위한 장학금 반환은 불가합니다.
※ 경로: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 장학금 포기·반환 서약서 제출

40. 주거안정장학금 수혜증명서 발급도 가능한가요?

답 변

- ▶ 수혜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1학기의 경우 10월 이후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경로: 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증명서 발급

